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791 / 전송 731-6795

문서번호 주개 58533 -2263

시행일자 1994. 9.26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년	양 하
주택국장	전결	
주택개량과장	5.2.12	법무담당관김사동
개량2계장	2.15	
기안	박 문 회	결재 1994. 9. 26 주택국장

제목 용산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및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1991-175호('91. 4. 9)로 지구지정 및 서울시고시 제1993-110호('94. 4.13)로 지구변경되고 서울시고시 제1993-85호('94. 3.21)로 개선계획수립변경고시된 우리시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지구개 변경(지구추가 629㎡)으로 인한 개선계획변경수립 요청이 있어

2.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(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)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변경수립하여 같은법 제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고시(안) 1부
 2.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도서 1부
 3. 개선계획변경결정 요청공문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게재 의뢰

1. 우리시 관내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 하였기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게재구분 : 고시
- 나. 게재건명 :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
- 다. 법규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

첨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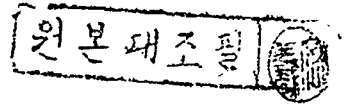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주택개발과장

제목 개선계획변경수립 보고



1. 건설부고시 제1991-175호('91. 4. 9)로 지구지정및 서울시고시 제1993-110호 ('94. 4.13)로 지구변경되고 서울시고시 제1993-85호('94. 3.21)로 개선계획수립변경고시된 우리시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

2.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(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)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변경수립 고시하였기 그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.

주각수인

첨부 1. 고시문 1부

2.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4안)

수신 용산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및 고시 통보

1. 주택 58533 - 2535('94. 9. 9)호와 관련임.

2. 위대호로 요청한 용산1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에 대하여 귀구 의견과 같이 개선 계획변경수립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를 도시정비과와 지적과등 관련부서에 통보 하여 도시계획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

2.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5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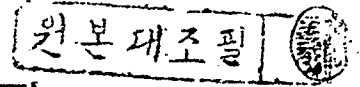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및 고시 통보

1. 우리시 관내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변경수립 및 고시 하였기
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

2.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

주 택 개 량 과 장

수신처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

주최국장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- 호



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

1. 건설부고시 제1991-175호('91. 4. 9)로 지구지정 및 서울시고시 제1993-110호 ('94. 4.13)로 지구변경되고 서울시고시 제1993-85호('94. 3.21)로 개선계획수립변경 고시된 우리시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 하였기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용산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4년 9월 9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개선계획수립지구의 명칭[✓] 위치 및 면적

지구명	위	면적(㎡)	시행방법
용산1	용산구 용산2가동 1번지일대	19,555	현지개량

나. 사업시행기간 : ~~1991. 1. 1.~~ ^{1993. 4. 17} ~ ~~1994. 12. 31.~~ ^{1996. 4. 16}

다. 사업시행자 : 용산구청장

라.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

1) 토지이용계획

구분	면적(㎡)	비율(%)	비고	
계	기정	18,926	100.0	지구추가편입(629㎡)으로 인한 변경
	변경	19,555	100.0	
주거용지	기정	14,125.6	74.6	
	변경	14,570.6	74.5	
도로	기정	4,759.5	25.2	
	변경	4,943.5	25.3	
공중변소	40.9	0.2	변경없음	

2)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등급	류 별	번호	폭(M)	사 용 형 태	기 능	연장 (M)	면 적 (㎡)	기 점	종 점
기 정	소로	2	1	8	일반도로	국지도로	187	1,496	1-1130	1-457
기 정	"	3	1	6	"	"	110	660	1-1486	1-740
변 경	"	3	1	6	"	"	120	720	1-1486	1-741
기 정	"	3	2	6	"	"	62	372	1-351	1-457
"	"	3	3	6	"	"	75	450	1-321	1-457
"	"	3	4	4	"	"	126	504	1-1330	1-17
"	"	3	5	4	"	"	70	280	1-336	1-1386
"	"	3	6	4	"	"	62	248	1-330	1-234
"	"	3	7	4	"	"	25.5	102	1-173	1-232
"	"	3	8	4	"	"	45	180	1-186	1-1414
"	"	3	9	4	"	"	45.5	182	1-137	1-580
"	"	3	10	4	"	"	33	132	1-594	1-590
"	"	3	11	4	"	"	43	172	1-567	1-575
"	"	3	12	4	"	"	29	116	1-557	1-559
"	"	3	13	4	"	"	131	524	1-638	1-457
신 설	"	3	14	4	"	"	23.5	94	1-589	1-1609
신 설	"		1	3	"	보행자도로	10	30	1-740	1-739

마. 개선계획변경사유 : 지구추가편입(629㎡)에 따른 개선계획변경

원본대조필

바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용산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는도서와 같음.